

植民地統治와 조선인의 대응*

모리야마 시게노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I. 머리말II.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ul style="list-style-type: none">1. 시기구분과 통치정책2. 식민지 통치의 특질<u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론적 틀2) 통치의 일반적 특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III. 조선인의 대응<ul style="list-style-type: none">1. 저항운동의 시기적 특질2. 저항운동의 일반적 특질3. 식민지 통치와 개인추출IV. 맷음말 |
|---|---|

I. 머리말

본 연구는 첫째로,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 통치의 특질을 검토한다. 먼저 시기구분을 한 다음에 그 차이 내지 단절성에 주목하여 각각의 시기에서의 특질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다음에 통치정책을 체계로서 이해하여, 일관성 내지 연속성에 주목해서 전 시기의 공통적인 특질을 추출한다. 둘째로, 조선인의 대응에 대해서도 먼저 조선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시기별로 특질을 검토하고, 다음에 일반적 특질을 특히 개인추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식민지 통치와 조선인의 대응이 역사적·체계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도 금후의 전망을 기초로 생각하고 쓴 시론이다*.

* 표제에 관한 연구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졸고 <朝鮮植民地經營>(鳥海靖 외편, 『日本近現代史研究事典』 東京堂出版, 1999년), 및 松本武祝 <'식민지적 근대'를 둘러싼 근년의 조선사연구('植民地の近代'をめぐる近年の朝鮮史研究)>(宮嶋 외편, 『식민지 근대의 시좌(植民地近代の視座)』 岩波書店, 2004년)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II.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

1. 시기구분과 통치정책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는 통상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10(明治 43)년의 한일병합에서, 1919(大正 8)년의 3.1독립운동까지의 이른바 ‘무단통치기’이다. 제2기는 1931(昭和 6)년까지의 이른바 ‘문화통치기’이다. 그리고 제3기는 1945(동 20)년까지의 이른바 ‘대륙병참기지화기’이다. 한편 제3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1940(동 15)년경을 분수령으로 전후로 나누어, 후기를 이른바 ‘총동원 체제’의 시기로 묶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도 이 방식에 따라, ‘총동원 체제’ 시기에 대해서는 별개의 연구에 맡기고 그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제1기의 조선통치의 특징은 종래의 이해로는 다음과 같다. 즉, 현병에 의한 全土의 감시·치안유지 및 독립운동의 탄압, 언론단속과 교육에 의한 민족문화의 말살,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조선인으로부터의 토지수탈, 그리고 회사령을 비롯한 제 법령에 의한 민족산업 억압 등이다¹⁾ 그런데, 정책 결정의 추이, 그 의도, 그리고 일본 국내의 정치세력의 배치 등에 주목하면, 약간 다른 모습이 떠오른다.

즉, 이 시기의 조선 통치정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육군에 의한 ‘정치적 독립영역’의 형성이었다. ‘정치적 독립’이란 일본 국내의 정치동향에 좌우되지 않는, 혹은 일본 국내의 정치세력으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를 움직이는 중심적 주체는 육군, 그중에서도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에 연결되는 세력이고, 그들은 초대통감 이토 하로부미(伊藤博文)의 보호정치에 반대하여, 거기에서 탈각, 병합=식민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더욱 나아가 조선과 중국 동북부=만주를 하나로 지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토의 보호정치는 많은 자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하여, 그 민족적 저항을 누르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것에 대해 육군은 비판적이었다²⁾. 또, 육군이 조선에 진출한 최대의 이유는 러시아와의 복수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데라우치는 그것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조선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철도, 금융, 그리고 통치기구를 통한 ‘鮮滿一體化 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일관해서 추구한 것이다³⁾.

그렇기 때문에 종래 지적된 통치의 특징도 ‘정치적 독립영역’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먼저 현병에 의한 통치는 이토가 실현할 수 없었던 민족적 저항을 억압해서 전토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고⁴⁾, 또 藩閥色이 심한 육군이라면, 언론단속 및 천황에게 충실한 ‘충량한 신

1) 山辺健太郎, 『일본통치 하의 조선(日本統治下の朝鮮)』(岩波書店, 1971년), 및 박경식,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青木書店, 1973년) 등, 열거할 틈이 없다. 한편 이하의 일본 통치에 관한 개괄은, 줄고, <일본의 조선 통치정책(1910-1945년)의 정치사적 연구(日本の朝鮮統治政策(1910-1945年)の政治史的研究)>(『新潟大學·法政理論』 제23권 3·4호, 1991년)에 의함.

2) 줄저,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87년)

3) 北岡伸一, 『일본 육군과 대륙정책(日本陸軍と大陸政策)』(東京大學出版會, 1978년) 및 위의 줄저.

4) 앞의 줄저, 黑田甲子郎, 『元帥寺内伯爵伝』(東傳記編纂所, 1920년), 小森德治, 『明石元二郎』(臺灣日日新聞社, 1928-29년). 한편 일본의 정치 지도자 중에는 현병통치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하라(原)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原奎一郎 편, 『原敬日記』 제3권, 明治

민’의 육성도 당연했다⁵⁾. 그 위에 일본 국내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의 근대적 토지소유제의 확립에 관해서 반대가 없었고⁶⁾, 민족산업 억압에 대해서도 ‘선만일체화 구상’에 적합적인 朝鮮工業化 정책에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총독부 인맥에 이어진 동양척식회사의 토지경영에 의한 토지수탈 및 철도·도로·통신망의 정비였다. 데라우치 등은 그 이외의 산업육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⁷⁾. 그리고 데라우치 등은 ‘정치적 독립영역’ 형성을 위해, 조선의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했다. 이것은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서 달성되어, 그들은 통치의 성공을 구가했다⁸⁾.

그러나 통치정책은 이윽고 파탄을 보였다. 일본으로부터는 정당세력에 의한 도전을 받고 또, 재정적 지원의 억제는 조선에서 수익자층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더욱이 관료적 지배는 한일 양국으로부터 비판을 당했다. 그러나 이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은 데라우치 등이 조선 민족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3.1독립운동의 발발이야말로 그 결과였다⁹⁾.

다음에, 제2기 시기의 통치정책은 종래의 이해로는 다음과 같다. 즉, ‘친일파’ 육성에 의한 민족분단,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농민수탈, 공업화에 의한 일본의 자본진출과 민족산업 억압, 그리고 민족운동 억압의 교묘화 등이다¹⁰⁾.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다른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통치정책은 정당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전후 2기로 나누어, 전기는 적극=동화정책, 또 후기는 진축=사회정책이었다. 전자는 총독이 육군이외에서 등용된데 나타난 통치정책의 非軍事化, ‘內地準據主義’에 의한 조선인의 관료등용, ‘친일파’의 육성·등용 및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익자층’의 창출, 그리고, 공공사업 확대와 정비된 산업기반에 기초한 공업화, 그것을 위한 일본의 자본진출에 의한 고용창출로 나타나, 종래의 재정 독립정책을 전환해서 적극정책이 추진되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 국내에서 政友會가 실행한, ‘수익자층’의 창출에 의한 통치의 안정화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1920년대의 ‘전후공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기는 재정의 진축화를 필자로 하여, 行財政 정리, 세제정리에 의한 중세, 지방에의 사업이관, 지방의회 선거 등에 의한 일부의 정치참가 실시와 치안유지법의 적용, 그리고 법적·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조선인 지방 엘리트 구제와 농촌구제, 나아가 產米의 일본 이송에 의

44년 5월 31일.

- 5) 《原敬日記》 제5권, 大正 8년 5월 15일, 三谷太一郎, 《일본 정당정치의 연구(日本政黨政治の研究)》(동경대학출판회, 1967년), 山本四郎 편, 《寺内正毅日記》(京都女子大學, 1980년), 明治 43년 5월 25일.
- 6) 지세부담자(지주)를 확정해서 그들에게 지방질서 유지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지조개정의 목적의 하나이고, 또 지방자치체 창설의 의도였다. 岡義武, 《山縣有朋》(岩波書店, 1958년)
- 7) 山辺 앞의 책, 大河内一雄, 《환상의 국책회사·동양척식(幻の國策會社·東洋拓植)》(일본경제신문사, 1972년), 조선은행 편간, 《鮮滿經濟十年史》(동, 1919년), 水田直昌, 《총독부시대의 재정-조선 근대재정의 확립-(總督府時代の財政-朝鮮近代財政の確立)》(우방협회, 1974년), 釋尾東邦, 《朝鮮併合史》(朝鮮及滿洲社, 192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편간, 《南滿州鐵道株式會社第二次十年史》(동, 1928년), 高成鳳, 《식민지 철도와 민중생활(殖民地鐵道と民衆生活)》(법정대학출판국, 1999년)
- 8) 水田 앞의 책, 堀和生<조선에 있어서 식민지 재정의 전개-1910-30년대 초두에 걸쳐서(朝鮮における 植民地財政の展開-1910-1930年代初頭にかけて-)》(飯沼二郎·姜在彥 편, 《식민지기 조선의 사회와 저항(殖民地期朝鮮の社會と抵抗)》 미래사, 1982년)
- 9) 北岡 앞의 책, 宮崎隆次<전전 일본의 정치발전과 연합정치(戰前日本の政治發展と連合政治)》(篠原一 편 《연합정치》 1, 岩波書店, 1984년), 《原敬日記》 제5권 大正 7년 11월 23일, 8년 3월 6일, 9월 3 일, 水田 앞의 책, 박경식, 《朝鮮三·一獨立運動》(평범사, 1976년)
- 10) 山辺 앞의 책, 및, 박경식 앞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등

한 국제수지 개선이 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또 일본 국내에서 民政党이 실행한 경제적 이익의 공여에 의한 질서유지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인의 부담증대, 과잉한 정치화, 그리고 농촌의 칭폐 등을 가져온 것이다¹¹⁾.

먼저 전기의 적극=동화정책은 ‘무단통치’의 폐해를 수정하기 위해 채용되었다. 당시의 수상 하라 타카시(原敬)는, “현 제도는--근본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도 내지도 모두 동일한 제도를 폐”서, “조선을 내지에 동화시키는 방침”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했다¹²⁾. 또, 세 및 官業收入의 증수에 더하여, 부활된 보충금과 새로 도입한 다액의 공채자금이 조선인 채용의 인건비 및 철도·도로건설·치수·항만회수 등의 공공사업 투자로 사용되어, 그것도 公共事業은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실시되었다¹³⁾. 언론·집회의 자유가 일부 인정되어, 지방의회 선거를 포함한 자치=조선인의 정치참가의 확대도 목표하였다¹⁴⁾. 그러나 그것을 지탱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호경기는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정책은 전환을 강요당했다. 후기의 긴축=사회정책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재정규모의 축소 및 증수를 목표로 하여, 그 때문에 중앙에서의 공채자금 및 보충금의 삭감, 관청 통폐합에 의한 직원정리, 영업세 및 소비세의 増徵 등이, 지방에서도 사업이관에 따른 부담증가의 해소를 위한 중세책 채용 등이 이루어졌다. 또 정책 전환에 따른 조선인의 불만 확대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의 적용에 의해 단속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제2차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조선인 엘리트를 총독부측에 끌어들려고 했으나, 일반농민의 부담 증가는 조선농촌을 폐폐시켜 조선인의 저항운동도 활발해지고, 자치 확대도 축소되었다¹⁵⁾. 더구나 ‘문화정치’에는 일본 국내로부터 비판이 생겼다. 특히 총독부에 있어서 관료정치의 진전, 본국의 정당정치에 호응한 국내정치 정세에의 추수, 그리고 그것에 따른 無策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¹⁶⁾. 이렇게 일본 국내

11) 前期의 적극=동화정책은 이하 참조. 齋藤子爵記念會 편간, 《子爵齋藤實伝》 제2권(동화, 1941년), 강동진, 《일본의 조선 지배정책 연구(日本の朝鮮支配政策研究)》(동경대학출판회, 1979년) 제3장, 河合和男 <조선 ‘산미증식계획’의 입안에 대하여-일본의 식료·쌀 문제와의 관련에서-(朝鮮產米增殖計劃)의立案について-日本の食料・米問題との關連から>(《朝鮮史叢》 제7호, 1983년 6월), 동, 《조선에 있어서 산미증식계획(朝鮮における產米增殖計劃)》(미래사, 1986년), 中村隆英, 《明治 大正期の經濟》(東京大學出版會, 1985년), 조선총독부 편간, 《施政二十五年史》(동 府, 1935년). 또 후기의 긴축=사회정책은 이하 참조. 堀 앞의 논문, 水田 앞의 책,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일본어 역, 御茶の水書房, 1985년), 坪江仙二, 《改定增補·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巖南堂, 1966년), 즐고, <矢内原忠雄>(山崎正和 편<언론은 일본을 움직인다(言論は日本を動かす)> 제3권, 講談社, 1986년), 宮崎隆次, <대정데모크라시기의 농촌과 정당(1)-(3)(大正デモクラシ-期の農村と政黨)>(《國家學會雑誌》 제93권 7·8-11·12호, 1980년)

12) 原敬, <朝鮮統治私見> 《齋藤實關係文書》書類의 部, 114-5.

13) 앞의 책, 《子爵齋藤實伝》 제2권, 水田 앞의 책, 堀 앞의 논문, 앞의 책, 《施政二十五年史》

14) 즐고,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민족주의(日本の朝鮮支配と朝鮮民族主義)>(北岡伸一·御廚貴 편, 《戰爭·復興·發展》東京大學出版會, 2000년), 동 <현지신문과 총독정치-《경성일보》에 대해서-(現地新聞と總督政治- 《京城日報》について)->(《岩波講座·近代日本과 植民地》 제7권, 岩波書店, 1993년)

15) 위의 즐고, 高橋進·宮崎隆次<정당정치의 정착과 붕괴(政黨政治の定着と崩壊)>(坂野潤治·宮地正人 편, 《일본 근대사에 있어서 전환기의 연구(日本近代史における轉換期の研究)》 山川出版社, 1985년), 堀 앞의 논문, 水田 앞의 책.

16) 앞의, 《子爵齋藤實伝》 제2권, 앞의 즐고, <일본의 조선 통치정책의 정치사적 연구>, 岡義武 외편, 《대정 데모크라시기의 정치-松本剛吉 政治日誌-(大正デモクラシ-期の政治-松本剛吉政治日誌-)》(岩波書店, 1959년), 岡本眞希子, <총독정치와 정당정치-2대 정당기의 총독인사와 총독부 관료·예

에서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세력, 즉 군부가 통치정책의 전환을 다시 군사화에 의해 이루려고 한 것이다.

제3기의 통치정책의 특징은, 강제연행 등에 의한 침략전쟁에의 동원, 창씨개명 등의 ‘황민화운동’에 의한 민족말살, 전시경제에 의한 수탈강화, 그리고 단속강화에 의한 민족운동 탄압을 들 수 있다¹⁷⁾. 그런데 여기서도 군부의 정책 검토에 의해 다른 모습이 그려진다. 즉, 이 시기의 통치정책은 주로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을 경계로 전후, 2기로 나누어진다. 전기의 통치정책은 육군 특히 우가키(宇垣) · 미나미(南)系 주도에 의한, 중공업화 정책, 후기는 총동원 정책의 수행이었다. 전기의 중공업화 정책이란, ‘農工並進’의 성원 아래에서의 중공업화와 농촌진흥운동, 만주국 방위를 위한 조선북부 개척, 그리고 외적을 이용해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전쟁수행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가키 · 미나미계의 국제 및 對 만주정책을 조선에 적용하는 것이었다¹⁸⁾. 후기의 총동원 정책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먼저, 전기의 통치정책은 육군, 특히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 미나미 지로(南次郎)계의 정책체계에 유래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방정책, 만주정책, 외교정책으로부터 이루어졌지만, 무엇보다도 군사적 열세 아래에서 소련과 대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육군 장비의 근대화와 군 배치의 대륙화, 지도체계 확립에 의한 점진적 만주정책, 對中政策의 결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환경을 일본과 소련과의 대결 도식에 집약시킨 다음에, 다시 군사화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었다¹⁹⁾. 따라서 그것이 조선에 적용된 경우, 조선은 만주국의 배후를 굳힐과 동시에, 국방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지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먼저, 중공업화에서는 중요산업통제법의 조선에 대한 불적용과 급속한 電氣資源 개발이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증대시켜, 조선은 ‘躍進工業’의 시대를 맞이한다²⁰⁾. 또, 철도 · 도로의 부설과 삼림개발, 및 緬羊增殖이라고 하는 ‘北鮮開拓計劃’은 다른 지역에서의 농민 이동=동원을 가져왔다²¹⁾. 더욱이 농촌의 자력갱생 · 自給自足을 지향한 농가갱생 5개년계획=농촌진흥운동은, 일정 정도의 자작농 창설과 도시로의 농민 이동을 촉진했다²²⁾. 그리고 민족의식 이용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萬寶山事件 등에 즈음하여 오로지 韓中國民 간의 적대심을 선동했다²³⁾. 한편 지방의회 선거 등의 정치참가도 위기를 전제로 사실상 동결되었다²⁴⁾. 이렇게 통치정책은 총동원 체제를 준비한 것이다.

산(總督政治と政黨政治-二大政黨期の總督人事と總督府官僚・豫算)>(《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38집, 2000년 10월).

17) 山辺 앞의 책, 및 박경식 앞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등.

18) 앞의 졸고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의 정치사적 연구>

19) 北岡伸一, <육군 파벌대립(1931~1935)의 재검토-대외 · 국방정책을 중심으로-(陸軍派閥對立(1931~1935)の再検討-對外 · 國防政策を中心として-)>(《年報 · 近代日本研究》 제1호, 昭和期의 軍部, 1979년)

20) 鈴木武雄, 『조선의 경제(朝鮮の經濟)』(일본평론사, 1942년), 조기준, 『근대한국경제사』(고려서림, 1981년)

21) 水田 앞의 책, 박경식 앞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서울, 장문각, 1973년)

22) 宮田節子, <조선에 있어서 ‘농촌진흥운동’(朝鮮における‘農村振興運動’)>(《계간현대사》 제2호, 1973년 5월), 동,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미래사, 1985년)

23) 緑川勝子, <만보산사건 및 조선 내 배화사건에 대하여(萬寶山事件および朝鮮内排華事件について)>(《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6집, 1969년 3월)

24) 앞의 졸고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민족주의>

2. 식민지 통치의 특질

1) 이론적 틀

본 연구에서는 통치정책을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이 틀에 의해 먼저, 일반적 특질을 검토한다. 즉, 통치정책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그것 사이에는 일정한 법칙 등에 따라 상호관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全體系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구성요소는 정책 주체로서의 인간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다수를 넘는다. 또 그들은 대략 집단·기관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집단·기관에 공통의 정신구조, 사고·행동양식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정책 목적·목표, 그 자원, 그들의 동원·수행 과정 등이 중요하다. 정책에 관한 목적·수단 관계인데, 그것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교육을 포함)등, 개별정책에 응해 다양하다. 둘째로, 주체, 목적·수단 관계, 개별정책이라고 하는 구성요소 간의 관계, 공통의 법칙·규범적 제 요소, 그 배경이 된 개념틀 특히 조선관이 중요하다. 그 때, 가치의 우선순위, 중요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그것들로 구성된 체계와 환경의 관계, 체계의 환경 적응으로서의 변화 과정 및 방향성 등이, 마지막으로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상의 작업은 매우 곤란하고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하 한정적인 검토를 하는데 그친다.

먼저, 첫째로, 조선 식민지화 직전, 정책주체는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일정의 경험, 즉 대만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²⁵⁾. 이 경험은 ‘六三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본과의 분리적 통치라는 방식이었다. 더구나 이 경험은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그것을 바꿀만한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 제도를 대만식으로 할까, 특별한 법 체제를 펼까, 일본 국내와의 공통법은 필요한가, 그리고 불평등 체제하에서는 국제적 법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는 많았다. 그러나 식민지화=병합한 것으로 해소된 문제도 있어,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틀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지도자들은 분리적 통치방식을 조선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문제는 해석에 맡겼다²⁶⁾. 즉, 법제도·법체제적으로는 대만의 경험에 유래하는 분리적 통치방식이 존재하고, 수정되지 않았던 것이 제1의 특질이다.

그러나, 조선통치 그것이 대만과 같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에는 왕조나 국민이 존재하여, 긴 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국토도 대만보다 넓고, 문화적 요인도 달랐다. 더구나 한일관계는 대만보다 훨씬 긴 다양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일정의 사고·행동의 틀,

25) 文竣嘆 <식민지 사법제도의 형성과 제국에의 확산(植民地司法制度の形成と帝國への擴散)>(淺野豊美・松田利彦 편, 『식민지제국 일본의 법적 구조』 信山社, 2004년), 山本有造 『日本植民地經濟史研究』(名古屋大學出版會, 1992년), 駒込武,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岩波書店, 1996년), 小熊英二, 『단일민족 신화의 기원 <일본인>의 자화상의 계보(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新曜社, 1995년), 동, 『<<일본인>의 경계(<日本人>の境界)』(新曜社, 1998년), 石田雄, 『기억과 망각의 정치학(記憶と忘却の政治學)』(明石書店, 2000년)

26) 상동 및 淺野豊美, <일본제국의 통치원리 ‘내지연장주의’와 제국 법제의 구조적 전개(日本帝國の統治原理‘内地延長主義’と帝國法制の構造的展開)>(『中京大學·社會科學研究』 제21권 1·2호, 2001년 3월)

조선이 일본에게 있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틀이 존재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객체관’이었다. ‘한국 객체관’은 근대, 대략 청일전쟁까지 강고하게 형성·정착하여, 그것을 수정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기간을 통해서 존속하여, 계승되었다²⁷⁾. 더구나 그것은 정책주체에 따라 자각화의 정도가 다르고, 또 정책이 표명될 때에는 ‘동화(同化)’나 ‘내선일체(內鮮一體)’ 등 대략 다른 개념이 사용되었다²⁸⁾. 그러나 정책기반으로서의 사고·행동틀은 일관해서 존재한 것이다. 즉, 통치에 관해서 ‘한국 객체관’이 기저에 존재하여 계속된 것이 제2의 특질이다.

셋째로, 실제로 결정·수행된 제 정책이 전부 그것에 기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 실행에 즈음해서는 제도적·상황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중요했던 상황적 요소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 이었다. 그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이고, 정책전환은 국제환경의 변동 내지 그 영향하에 이루어졌다. 다음에 중요했던 것은 조선의 대응 즉 조선인 엘리트의 동향, 민족운동의 消長, 민족운동과 외국 특히 공산주의국과의 관계 등이었다. 그위에 일본에 있어서 정치세력의 배치여하도 중요했다. 즉, 식민지화 전부터 일정의 사고·행동틀 및 통치방식의 선례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아닌가는 그것이 국제환경, 조선의 동향, 그리고 일본 국내의 정치상황에 적합적인가에 관계된 것이다²⁹⁾.

그렇기 때문에 정책 주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만큼 많지 않았다. 또, 국제환경을 변경할 정도로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국력은 강대하지 않고, 조선의 대응을 결정할 정도로 정책 주체는 자유롭게 정책을 변경할 수 없었다. 즉 목적·수단 관계는 상당정도, 제약적이고, 그것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자원도 역시 한정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행동틀과 통치선례를 전제로 하는 이상, 그들이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바로 현실적 고려이고, 그것은 종래의 통치정책의 전 체계를 과거하는 것이 없도록, 개개의 정책결정에 즈음해서도 작용하였다. 즉, 개별정책과 통치정책 전 체계와의 정합성이 중요시되어, 정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그 정책은 결정되지 않거나 포기되고, 이렇게 현실적 고려에서 결정된 정책은 통치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정책 주체가 집단·기관에 속하고, 다른 주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상, 정책 실현에서 타협은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의 방책이 된다. 조직 간의 타협을 위해 필요한 고려야말로, 현실적 고려였다고 할만하다³⁰⁾. 즉 정책결정에 있어서 현실적 고려야말로 제3의 특질이다.

27) 졸고, <명치기 일본지도자의 한국인식(明治期日本指導者の韓國認識)>(宮嶋博史·金容德 편, 『日韓共同研究叢書 2 近代交流史와相互認識 1』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년), 동, <야당 정치가·언론인의 한국관·‘동화주의’와의 관련에서-野黨政治家·言論人の韓國觀·‘同化主義’との關連から-> 및 <식민지기 일본인의 한국관-선택지의 소장(植民地期日本人の韓國觀-選擇肢の消長)>(『日韓共同研究叢書 12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II-日帝支配期』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년).

28) 상동 졸고, <명치기 일본지도자의 한국인식>, 小熊 앞의 책, 『<일본인>의 경계』石田 앞의 책, 駒込 앞의 책.

29) 앞의 졸저, 『근대일한관계사연구』동 졸고,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민족주의>

30) 특히, 총독부와 본국 각 성청과의 관계, 및 의회에 있어서 총독부의 예산승인을 둘러싼 교섭 등, 이러한 종류의 현실적 고려에 대해서는 열거할 짬이 없다. 앞의 졸고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의 정치사적 연구>, 동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민족주의> 및 MORIYAMA Shigenori,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and Urban Change: Aspects of the Control of Cities, *The Memoirs of the Toyo Bunko*, No.60, 2002.

그러나, 현실적 고려를 실제로 작용시키는 것은 상술한 제 요소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체계 중에 있던 통치정책 전 체계를 유지·운영하는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1에서 제3의 요소를 전제로 하는 이상, 그것은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일 수밖에 없다. 개개의 정책이 통치정책 전 체계와 대립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이상, 정책 주체는 특별히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지 않는 한, 타자와의 관계, 개개의 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법적근거, 선례, 동원·이용할 수 있는 제 자원 등 다양한 요소를, 사고·행동틀을 기초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책 수행에 있어, 그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즉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마도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가능성을 제일 많이 넣는 사고·행동양식이야말로,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이었다. 더구나 조선 통치는 총독부가 직접 담당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통제는 관료적 사고·행동양식과 그 제도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³¹⁾. 그런데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에는 합리적 내지 예측 가능성 이란 특성 이외에도 실은 마이너스의 요소도 존재한다. 그것이 관료주의라고 총칭되는 특성이고, 先例踏襲, 문서주의, 책임회피, 조직에 있어서 할거성 등의 제 요소이다. 그것들도 통치정책에 반영된다. 정책 전 체계를 변동하기 어렵게 한 것도 그것이었다. 즉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이야말로 통치정책에 있어서 제4의 특질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이 결정·수행될 때,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이 이른바 ‘위에서부터의’ 행동의 특질이라고 하면, 포섭할 수 없는 부분은 이른바 ‘아래의’ 공동체의 특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주체는 그것을 돌파해야 할 여러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존재했다. 그것이야말로 대상인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이었다. 근대일본과 같이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은 그것에 부딪쳐, 그것과 격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강경하게 돌파하려고 할 때, 정책의 전 체계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³²⁾.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아래로부터’ 정책 전 체계에 반응하여, 때로는 반발하는 부분, 그것이야말로 조선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민족의 복’이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른다³³⁾. 즉, 기저에 존재한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이야말로 제5의 특질이다.

이상의 고찰을 전제로 할 때, 식민지 통치정책은 어떻게 결정·수행되었을까. 그것을 인과관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최초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인 틀이 먼저 존재했다. 그것이 ‘한국 객체관’이다. 그러나 ‘한국 객체관’이 그대로 바로 현실에 옮겨진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정책 체계에 반영되는 데는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환경 가운데 중요한

31) 특히 ‘문화정치’기의 총독부에 있어서 정책결정은 일본 국내에 있어서 십의기관, 예를 들면 임시재정경제조사회 등과 제도적으로 관련되는 것처럼, 정무총감 주도하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앞의 졸고,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의 정치사적 연구> 및 利谷信義·本間重紀, <천황제 국가기구·법체제의 재편(天皇制國家機構・法體制の再編)>(原秀三郎 외편, 『大系·日本國家 5-近代 II』 동경대학출판회, 1976년)

32) 근대일본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관료적 사고·행동양식과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적 정서와의 충돌에 대해서는, 천황제의 인식론적 구조로, 丸山眞男이 분석하고 있다. 丸山眞男, 『日本の思想』(岩波書店, 1961년), 동, 『증보판·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増補版・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미래사, 1964년), 및 앞의 졸고, <식민지기 일본인의 한국관-선택지의 소장> 참조.

33) 宮田節子, <‘내선일체’의 구조(‘内鮮一體’の構造)>(『역사학연구』 제503호, 1982년 4월), 동 앞의 책,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및 松本武祝 앞의 논문.

것은 국제관계, 조선의 대응, 그리고 일본 국내의 정치상황이고, 그것들에 적합적이 아니면 ‘한국 객체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또, 일본이 현실에 식민통치 정책을 실현한 것은 대만이 최초이고, 그것이 조선에 통치정책을 시행할 때 선례·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환경이 정책 체계를 적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달했을 때, 현실적 고려가 작용했다. 혹은 현실적 고려에 의해 정책 체계는 환경과 적합적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조선과의 관계는 현실의 통치라고 하는 단계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치를 담당하는 제 집단·기관은 그전에 관료제적으로 정비되어 있었다. 여기에 현실적 고려가 관료제적 사고·행동양식으로 나타나, 그것이 가진 다양한 특성이 통치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강고한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에 직면하여, 때로는 강경하게 ‘위로부터의’ 돌파가 시도되어, 그것이 정책 전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2) 통치의 일반적 특질

통치의 특질로서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할 것은 조선이 분리적 통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통치가 분단지배, 조선 국민 및 조선 문화의 소외, 그리고 조선 국민에 대한 독특한 억압방식 등이 편성된 것, 즉 철저한 종속화였던 것이다³⁴⁾. 먼저, 법제도·법체제적으로는, 일본은 조선에 대일본제국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조선인의 기본적 권리를 일본인과 동등하게 하지 않았다. 병합 조서에는 ‘一視同仁’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 법률도, 대만에서의 ‘六三法’에 의한 ‘授權’ 방식에 따라, 民事令 등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어, 내지와는 다른 형태로 법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 적용·해석에는 ‘依用’이 이루어졌다³⁵⁾. 더구나 각 식민지의 사법제도를 일본의 사법체계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존재했지만 좌절했다³⁶⁾. 분리적 통치방식은 계속한 것이다.

다음에, 일본은 ‘친일파’를 육성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 식민지 통치의 ‘수익자층’을 만들어내는 한편, 반일독립운동을 모든 수단을 써서 회유하고, 혹은 탄압했다. 즉, 일본은 환경으로서의 조선의 대응을 가능한 한 통제하려고 하고, 또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민족분단 정책’이라고 통상 불리지만 통치가 장기화하는데 따라, 결과적으로 조선 국민 가운데에서 식민지 통치에 적응하는 부분, 이른바 ‘협력메카니즘’ 혹은 ‘외세의존형’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위에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의 利益政治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전 사회에 확산시켜, 한층 이 경향을 강하게 했다³⁷⁾. 그러나 그들은 조선 국민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많았을 것이다. 또 분단지배는 ‘친일파’로 낙인을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상

34) 이하의 서술에 대해서는 출처, 『한국현대정치』(東京大學出版會, 1998년), 45-53쪽, 및 출고, <근대조선에 있어서 국가형성과 개인(近代朝鮮における國家形成と個人)>(『중국-사회와 문화』 제6호, 1991년 6월) 참조,

35) 출고, <보호정치하 한국에 있어서 사법제도의 이념과 현실(保護政治下韓國における司法制度の理念と現實)>(淺野・松田 편 앞의 책, 『식민지제국 일본의 법적구조(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 淺野豊美 < 국제질서와 제국질서를 둘러싼 일본제국 재편의 구조(國際秩序と帝國秩序をめぐる日本帝國再編の構造)>(淺野豊美・松田利彦 편, 『식민지제국 일본의 법적 전개(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展開)』信山社, 2004년)

36) 상동 및 田中隆一, <제국일본의 사법연쇄(帝國日本の司法連鎖)>(『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38집, 2000년 10월)

37) 앞의 출고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민족주의>, 동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의 정치사적 연구>, 강동진 앞의 책.

호불신을 일상적으로 조선인 사이에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상호 경쟁하는 ‘수익자층’과 반일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본 통치에 반발하면서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자기방위를 위해 ‘宗族’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인간관계망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관계망 외의 사람들·집단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권위주의를 강화했을 것이다.

또 일본은 관료의 말단부분에만 조선 국민을 채용하는 등, 조선 국민의 대부분을 정치기구, 하물며 권력으로부터 소외시켰다³⁸⁾. 그 결과 조선 국민은 관료가 된 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근대적 정치운영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조선 국민의 정치참가는 ‘문화정치’로 매우 소규모로 또한 서서히 실시되어, 게다가 통치 말기에는 일부 참정권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매우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큼 정치참가 기회의 중대는 탄압과 더불어, 조선 국민 사이에 과잉적인 경쟁 및 정치화 현상을 가져왔다. 그것은 권위주의의 확산과 함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중대시켜, 여기서도 조선 국민에 대한 분단지배를 강화하게 되었다. 또 전술한 것처럼 교육에서도 일본어 교육이 중시되어 천황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합리화를 목표 삼았다. 여기서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부분과 반발하는 부분과의 분열이 만들어졌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후자 중에서 민족의 전통문화를 모색해서 민족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만들어진 일일 것이다. 그것은 머지않아 조선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것에 연결된다.

그리고 일본의 헌병 및 경찰의 보안체제는 철저한 종속화때문에, 일본에 협력적인 집단 외에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했다³⁹⁾. 이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는 일본의 권력으로부터 자립적일 수 있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고, 그 결과, 조선국민은 총독부의 명령에 종속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서도 권위주의가 일상화함과 동시에 상호불신이 증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에 반발하는 조선 반일독립운동의 리더십은 사회주의적이거나, 보수적인 민족적인 것이라도, 조선국내에서는 친일적인 외관을 가장하거나, 혹은 지하에 숨었고, 또 국외에서는 운동의 중심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현실적 고려 및 관료적 사고·행동양식의 존재 때문에, 일본의 통치정책은 대략 일본의 근대화 방식이 통치기의 처음에 큰 틀로 정해져, 그것이 그대로 조선에 가져간 것이고, 통치기를 통해서 크게 수정되는 일이 없었다. 먼저, 일본은 조선에 근대적 관료제에 기초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일본 자신이 근대화할 때에 처음으로 행한 것이고, 조선 개국 후의 일본의 대한정책의 중점정책이기도 했다⁴⁰⁾. 다음에, 일본의 통치정책의 목적은 대략 ‘동화’ 내지는 ‘내선일체’가 되어, ‘내지준거주의’ 등이 표방되었지만, 실제로는 전술한 것처럼 조선 국민에게 일본 국민과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⁴¹⁾. 조선은 중앙에 총독부라고 하는 조선 국

38) 橋谷弘, <1930·40년대의 조선사회의 성격을 둘러싸고(1930·40年代の朝鮮社會の性格をめぐって)> (《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27집, 1990년 3월), 濱口裕子, 『일본통치와 동아시아사회(日本統治と東アジア社會)』(勁草書房, 1995년).

사회(日本統治と東アジア社會)』(勁草書房, 1995년).

39) 山辺 앞의 책, 박경식 앞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강동진 앞의 책, 강재언, 『조선근대사』 (평범사, 1986년), 糟谷憲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朝鮮總督府の文化政治)>(《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제2권, 岩波書店, 1992년), 강창일,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식민지유산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서울, 역사비평사, 1994년 6월) 등, 열거할 쌈이 없다.

40) 앞의 출처, 『근대일한관계사연구』

41) 상동 출처 및 출처, 『일한병합』(吉川弘文館, 1992년)

민의 생활여탈의 권력을 잡는 강력한 지배기구 아래에 놓여져, 일본의 권력은 말단에까지 관철되고, 지방의 독자성은 약해져 동질화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조선의 중앙지향은 관료제라고 하는 근대적 외관을 가진 통치기구 아래에서 한층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식민지시대의 도시화 및 유동성의 증가도 경제정책의 결과였지만, 중앙지향을 더욱 강화했다⁴²⁾. 더구나 그것들이 통치기의 처음에 큰 틀로 정해져, 통치기를 통해서 용이하게 수정되지 않았던 것은, 도시정책에서도 자치정책에서도 보였다⁴³⁾. 그리고 이것들도 또한 조선 국민 가운데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상승지향을 강화함과 함께, 권위주의적 행동양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되었다.

또, 토지조사사업, 철도·도로부설, 산미증식계획, 교육에서의 ‘충량한 신민’의 육성, 그리고 언론·집회의 억압 등도 전술한 것처럼 메이지 일본에서 藩閥政府가 해온 것이었다⁴⁴⁾. 더구나 조선통치가 주로 육군과 그것에 연결되는 세력에 의해 맡겨진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에는 이들 정책은 육군에 의해 철저하게 실행되었다(교육은 초등교육·실업교육만이 중시되었다). ‘문화정치’기에는 조선통치가 정당에 연결되는 세력에 의해 맡겨진 일도 있고, ‘내지연장주의’의 이름아래 한글신문의 발간 및 고등교육 시설의 개설 등, 일본의 민주화·자유화는 어느 정도 조선에도 도입되었지만, 그런 한편으로 정당정치의 폐해인 이익정치가 조선에 들어가 조선 국민에게 경쟁 현상을 강화시켰다. 그 위에 30년대 이후의 ‘대륙병참기지화’기에는 일본에서의 총동원 체제가 일본보다도 철저하게 수행되었다. 중일전쟁 나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치정책은 가혹함을 더했지만,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자유의 억압을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더구나 조선에서의 방식은 거꾸로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다⁴⁵⁾.

그렇지만 전통도 문화도 다른 조선에 대해 일본식의 근대화 정책을 강행한 것은 조선인에게 일본에 대한 증오감을 보다 한층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즉, 일본은 조선의 전통이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조선을 일본의 鑄型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그 최악의 예는 ‘창씨개명’ 즉 조선명의 氏(姓)를 버리고 일본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전통을 최대로 중시하는 전통이 있는 조선에서 이러한 무신경한 행위는 반일감정을 없애기 어려운 것으로 했다⁴⁶⁾. 다음에 통치정책이 일본 국내의 정치상황에 계속해서 좌우되고, 혹은 총독부 구성원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조선으로부터 이탈의 희망을 가지고 있던 것 등은⁴⁷⁾, 일부에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증가시켰지만, 대체로 일본의 통치정책 및 그 담당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증대시켰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식의 근대화를 밖으로부터의 강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편으

42) 앞의 출처, 『한국현대정치』 및 MORIYAMA Shigenori, *op. cit.*,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and Urban Change.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서울, 일지사, 1996년), 동, 『한국지방제도·자치사 연구(상)』(서울, 일지사, 1992년)

43) MORIYAMA *op. cit.* 출고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민족주의>

44) 앞의 출처, 『근대일한관계사연구』 출고,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의 정치사적 연구>

45) 三谷太一郎, <전시체계와 전후체제(戰時體制と戰後體制)>(『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제2권, 岩波書店, 1993년), 石田 앞의 책.

46) 宮田 앞의 책, 및 김영달, 『창씨개명의 법제도와 역사(創氏改名の法制度と歴史)』(『金英達著作集』 제1권, 明石書店, 2002년)

47) 앞의 출고,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의 정치사적 연구>, 岡義武 외편 前掲 『大正デモクラシ-期の政治-松本剛吉政治日誌-』, 岡本眞希子 前掲 <총독정치와 정당정치-2대 정당기의 총독인사와 총독부 관료·예산(總督政治と政黨政治-二大政黨期の總督人事と總督府官僚·豫算)>

로는 근대화에 저항하는 행동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전통을 모색하고, 혹은 강화했다. 이렇게 일본의 통치정책은 조선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커녕, 할 수 없이 종속해도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일감정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전통의 강화로 향했다.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은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장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 지도자도 역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통치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교화해 나갔다. 예를 들면, ‘일선동조론’ ‘정체론’ 혹은 ‘타율성사관’ 등이 정당화에 사용된 이론이고, 그것들을 ‘충량한 신민’의 육성을 위한 교육에 의해 반복해서 심었다⁴⁸⁾.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구조의 재생산과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당화의 논리는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조선 통치의 표면적인 목적이 된 ‘동화’ 혹은 ‘내선일체’와 본래 모순되는 것이었지만, 일본은 그러한 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정책의 수행과 정당화·차별구조의 재생산의 연쇄는 결국은 일본에게 딜레마를 가져왔다. 즉 통치정책은 일본이 그 효과를 올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거꾸로 조선 국민의 반일감정을 강화시켰다. 조선의 현실은 특수한 양식으로 강화된 것이다.

셋째로, 일본 경제에 종속적이고 상황의 존적인 경제정책의 실행은, 이러한 일본 통치의 문제점을 한층 확대했다. 이른바 ‘식민지적 근대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⁴⁹⁾. 먼저, ‘무단통치’기의 경제정책은 육군의 의향에 따라 철도부설 이외에 볼만한 경제정책을 가지지 못하고, 또 재정독립 계획이 가장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재정지출은 삭감됨과 동시에, 징세가 철저하게 되어, 결과로서 조선인의 생활상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또, ‘문화정치’기의 주요한 경제정책인 ‘산미증식계획’도 일본의 재정상황 및 쌀의 수급관계에 의해 좌우되어, 조선인 중에 ‘수익자층’을 만들어 내려는 당초의 의도와 달리, 농민의 계층분화와 농촌의 폐폐를 낳았다. 나아가 ‘문화정치’의 후기에는 본국 일본의 재정상황 악화 때문에 경제정책도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行財政 정리에 의한 조선인 관리의 합리화 및 増稅가 되어 나타났다. 조선인 소외 및 부담의 증대가 다시 현실화한 것이다. 그리고 ‘대륙병참기지화’기의 중공업화 정책은 만주의 방위를 최우선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 균형을 잦게 만들었다. 특히 중일전쟁 시작에 따라, 조선에서는 民需가 극단적으로 저하되고, 더구나 조선은 다른 식민지의 인플레이션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⁵⁰⁾. 통치 말기에는 공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사회적 유동성을 늘었지만, 총동원 계획에 기초해서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폐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은 자력으로의 재생산이 매우 곤란한 상태인 채, 일본의 폐전을

48) 졸고, <명치기 일본 지도자의 한국인식> 및 宮嶋博史 <일본에 있어서 ‘국사’의 성립과 한국인식(日本における‘國史’の成立と韓國認識)>(宮嶋博史·金容德 편 앞의 책, 『일한공동연구총서2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년), 駒込 앞의 책, 旗田巍 편, 『심포지움·일본과 조선(シンポジウム・日本と朝鮮)』(勁草書房, 1969년).

49) 경제에 대해서는 堀和生 『조선공업화의 사적분석(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有斐閣, 1995년) 참조. <식민지근대성>에 대해서는 도면희, <자주적 근대화와 식민지적 근대> 및 松本武祝, <‘식민지적 근대’를 둘러싼 근년의 조선사연구(‘植民地的近代’をめぐる近年の朝鮮史研究)>(모두 앞의 宮嶋 외편, 『식민지 근대의 시좌(植民地近代の視座)』) 참조.

50) 羽鳥敬彦 <전시하(1935-1945년)조선에 있어서 통화와 인플레이션(戰時下(1935-1945年)朝鮮における通貨とインフレーション)>(飯沼·姜 편 앞의 책)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통치에 대항하는 조선의 저항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것에 의해 조선내셔널리즘은 변화했을까. 또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는가. 공동체와 한사람 한사람의 조선인과의 관계는 근대화로 인해 무엇인가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추출되지 않았는가. 즉 조선인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다음절에서 검토하자.

III. 조선인의 대응

1. 저항운동의 시기적 특질

조선의 저항운동은 통상 3기로 나누어진다. 제1기는 3.1독립운동까지의 시기이고, 이른바 ‘비밀결사 운동기’이다. 제2기는 1920년대이고, 이 시기는 ‘실력양성운동’, ‘민족협동 운동’, ‘대중 조직화운동’의 세 운동이 있다. 그리고 제3기는 1930년대 이후이고, 이른바 ‘국내운동 위축기’인데, 그런 한편으로 국외에서의 저항운동은 지속되었다고 한다.

먼저 제1기의 저항운동의 특징은, ‘무단통치’에 직면해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서 유래하는, 국내에서의 산발적인 ‘비밀결사 운동’의 전개 및 국외에서의 무장투쟁 근거지 형성의 시작이다. ‘무단통치’ 초기에 일어난 安岳사건 및 百五人사건은 광범한 저항운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구래의 국권회복운동은 해소되어, 국내에서는 大韓國民會와 같이 산발적으로 비밀결사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일본에 의한 탄압으로 용이하게 확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국외에서는 주로 무장 근거지 형성이 시작하여, 서간도에서는 耕學社 또 북간도에서는 重光團 등이 학교 설립부터 군인훈련을 행하여, 각각 西路軍政署 및 北路軍政署가 되었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독립 후의 국가구상에서 대립이 보여, 대한제국 회복을 지향하는 집단은 이윽고 獨立義軍系로, 공화국 건설을 지향하는 집단은 곧 大韓光復團으로 분열하게 된다⁵¹⁾. 이렇게 이 시기의 운동은 초점을 찾아내지 못한채 계속된다.

제2기의 저항운동은 내셔널리즘의 외압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한 3.1독립운동의 발발을 단서로 하여, 국내에서의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에 따른 民立大學 설치 운동이나 物產獎勵運動 등의 ‘실력양성운동’, 사회주의의 도입에 따른 대중 조직화와 新幹會의 결성에 보이는 ‘민족협동 운동’, 공산당의 결성, 그 위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광범한 전개, 위기감을 가진 총독부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 등에 대한 조선인의 참가=자치 확대의 모색, 그리고 국외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및 만주로부터의 국내 진공작전의 전개에 보이는 무장투쟁의 활발화 등, 여러 가지 운동의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먼저, ‘실력양성운동’은 ‘문화정치’에 의한 다양한 포섭·회유책의 결과, 실효를 수반하지 못하고 해소되었다. 뒤이어서 ‘민족협동운동’은 곧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및 사회주의자와의 대립으로 해소되어, 조선공

51) 한국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는 방대한 수를 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참조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하의 저명한 통사를 참조하고 싶다. 한영우, 『한국사회의 역사』(일본어역, 吉田光男 역, 明石書店, 2003년), 강만길 앞의 책, 강재언 앞의 책 등.

산당은 치안유지법 시행에 의해 4회에 걸쳐 탄압되었다. 국외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파 대립으로 인해 분열하여, 만주의 운동도 일본의 간도출병 및 張作霖 정권의 단속에 의해 점점 곤란해졌다⁵²⁾. 이렇게 이 시기의 운동도 당초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차츰 실행이 어려워졌다.

제3기는 국내에서는 공산당 계열에 의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조직화됨과 동시에, 민족문화 수호운동도 전개되고, 국외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과 東北抗日連軍 등 민족연합전선과 항일무장 투쟁이 강화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좌경화에 따른 탄압 및 코민테른 지령에 기초하여 조선공산당이 중국공산당에 흡수되자, 농민운동·노동운동은 고립과 좌절의 길을 걷는다. 또, 국외의 항일무장 투쟁도 일본의 만주진출에 따라 탄압을 입어 점차 해소되어, 근거지도 만주에서 러시아영으로 후퇴해갔다. 그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동도 잇달아 분열을 더해, 중국 국민당에의 종속도 보이게 된다⁵³⁾. 이렇게 이 시기의 운동도 쇠퇴하여, 그 결과 독립은 밖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저항운동은 전체로서 어떠한 특질을 가졌을까.

2. 저항운동의 일반적 특질

무엇보다도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조선내셔널리즘을 변용시킨 것이다. 19세기에 시도된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과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 때문에 좌절되어, 이른바 ‘未完’의 사업으로 계승된 것이다. 더구나 조선내셔널리즘은 무엇보다도 저항운동으로서, 즉 ‘저항 민족주의’의 강화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저항운동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분수령으로 전후 두 시기로 나누어져, 전기에서는 군주제로부터의 탈각이, 후기에서는 통일전선의 형성이 각각 모색되었다. 이것들은 조선내셔널리즘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특질을 각인시켰다.

먼저 첫째로, ‘저항 민족주의’로서의 조선내셔널리즘의 형성은 국민(네이션)국가 관념의 형성의 늦음과 민족독립이라고 하는 과제의 우선이란 특질을, 조선내셔널리즘에 각인시켰다. 그 최대의 이유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였지만, 그것에 더하여, ‘저항 민족주의’에 있어서 저항의 구심점의 필요, 및 저항운동에 있어서 지배층과 민중의 분열이라고 하는 전통의 존재 등도 역시 그 것에 결과로 기여했다. 먼저 ‘社稷’에의 위협에 대한 지배층의 저항이 때로 민중의 저항과 결합하는 것은, 조선 정치의 전통의 하나이고, 바로 19세기에 그것은 부활하여, 현실화했다. 이 때, 저항의 구심점은 국왕이었다. 더구나 국왕의 위치는 18세기의 ‘一君萬民思想’에 의해 정당화 되었고, 더욱이 19세기말에는 대한제국의 건국으로 국왕이 황제가 되는 것에 의해 강화되어 갔다. 국왕·황제라고 하는 당시 유일의 강력한 지도자가 내셔널리즘의 인격적 상징이 되어 저항의 구심점이 된 것은, 동시에 ‘社稷’의 유지가 민족적 저항운동의 당면의 과제가 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거기서는 국민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의 목적은 생겨나지 않는다. 군주제 및 ‘사직’의 유지라고 하는 민족적 가치 내지 정통성의 쌍방으로부터 탈각 없이, 조선내셔널리즘의 과제는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前期에 있어서 ‘개화파’ 및 그 계승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것을 위해서는 군주 및 지배층이 운동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52) 상동, 및 『齋藤實關係文書』書類의 部, 95-16 <독립운동 종식 후에 있어서 민족운동의 개황(獨立運動終熄後ニ於ケル民族運動ノ概況)>(昭和 2년 1월).

53) 상동 및 송건호, 『日帝支配下の韓國現代史』(일본어 역, 박찬호 역, 風濤社, 1984년)

존재인 것이 자각됨과 동시에, ‘사직’에 대신하는 국민국가 관념이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군주권 및 ‘사직’이 부정되고, 민주공화제가 정통성을 얻은 것은 바로 3.1독립운동 때 였다⁵⁴⁾. 그러나 일본 통치하에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것, 즉 스스로의 질서 및 정치적 권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과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였다. 이렇게 국민국가 관념의 형성은 여러 가지 전통 때문에 늦어지고, 더구나 일본이라고 하는 저항운동의 적 때문에 민족독립이라는 과제에 종속한 것이다.

둘째로, 後期에서 통일전선의 형성이 끊임없이 모색된 것으로 분명해진 것처럼, 저항운동의 리더십은 항상 분열하여, 통일되는 일이 없었다. 운동 분열의 이유는 통상,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상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난과 주도권 투쟁에 의한 분열, 국내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적응현상과 국외에서의 그것에 대한 규탄에 의한 국내외 저항운동의 관계의 분열, 그리고 사회주의의 도입에 기초하는 좌우대립의 격화 등이다⁵⁵⁾. 그런데 분열의 배후에는, 이러한 이유 외에 조선의 정치 전통이 존재함과 동시에, 더구나 그것들이 식민지 통치하에서 독특하게 강화 혹은 변화했다는 사실이 존재했다. 중앙지향이라는 전통에서 보면, 지향해야 할 중앙, 정치적 권위가 일본의 총독부라는 저항운동의 적이라는 것은 지향의 대상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더구나 지방에서 중앙과는 다른 독자의 기반을 구축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은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저항운동에는 구심점이 필요했지만, 민주공화제라는 정통성이 확립된 시점에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고, 각 지도자가 구심점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사태가 생겨났다. 구심점이 되는 데에는 정통성이 필요했지만, 이전의 ‘당쟁’과 같이 정통성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열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결국은 구심점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국민국가 관념의 형성이 늦어진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는 리더십의 결여를 가져왔다. 이렇게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지도층은 ‘명분’ 및 정통성을 둘러싸고 분열한 것이다.

다음에, 지도층과 민중의 분열이라고 하는 전통은 여기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지도자들은 정통성에서 다른 지도자의 위에 서는 것에 전념하여 민중에 대한 조직적 공작을 구상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혹은 할 수 없었다. 민중은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에게 승리하기 위한 자원 일 뿐 지도자들은 민중의 ‘恨’ 혹은 ‘在野’의 에너지를 퍼 올리는 일은 없었다. 이전 동학이라고 하는 민중의 사상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항운동에 유효하게 동원하는 것은 지도들에게는 불가능했다. 더구나 민주주의는 관념으로 도입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한 경험은 부족했다. 이러한 저항운동 내부의 분열의 한편에서 민중의 저항의 시좌를 제시한 것은 사회주의 세력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대립세력을 비판하기에 급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또 대립세력도 사회주의적 정통성을 배제하는 일에 노력했다. 더구나 예를 들면 간도지방과 같은 공동의 실현 가능성성이 있던 지역에서도 국제공산주의는 ‘一國一黨主義’를 표방함과 동시에, 민중의 조직화를 경시했다⁵⁶⁾. 그래서 지도층과 민중과의 협동도 실현되지 않았던

54) 강만길,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동, 『分斷時代の歴史認識』 일본어역, 宮嶋博史 역, 학생사, 1984년)등, 이 지적도 일일이 열거할 짬이 없다. 한편 본 절의 기술에 대해서는 앞의 졸저, 『한국 현대정치』 참조.

55) Michael E. Robinson,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한영우, 『韓國社會의歷史』(일본어 역, 吉田光男역, 明石書店, 2003년) 등, 이 지적도 열거할 짬이 없다.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통적 인간관계망이 다시 강화 되어, 근대화는 처음에는 반발을 당했다. 먼저, ‘민족개조’에 의한 근대화를 제시한 지도자는 반발을 당해, 전통적 조선보다도 근대적 일본에 점근했다. 민족진영 내부에서의 상호불신은 더욱 강해져, 일본에 의해 탄압되거나, 혹은 ‘친일파’의 낙인을 찍히는 일이 없도록, 이런 종류의 운동이 적극화하는 일은 없었다⁵⁷⁾. 또, 반일 독립 운동에서도 국내에서의 민중에 대한 공작은 일본 통치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지도층 내부 및 지도층과 민중은 각각 분열한 것이다.

셋째로, 이상 살펴본 사실 및 前期에 있어서의 국왕의 존재와 後期에 있어서의 저항운동의 분열과 거기에서의 경쟁 때문에 ‘저항 민족주의’와 종래의 전통적 권위주의는 결합했다. 먼저 전기에서 국왕·황제가 저항운동의 구심점인 한, 권위주의가 극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런데 민주공화제가 정통성으로 확립된 후기에서도, 권위주의적 요소는 용이하게 극복되지 못했다. 저항운동에는 국왕에 대신하는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일본의 강력한 통치에 대해 전통이 다시 강화된 것은, 이 경향을 더욱 강하게 했을 것이다. 인간관계망에 있어서 권위의 존재와 그 아래에서의 단결의 유지는 자기방위를 위해 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조직이 계속해서 분열하여, 통일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이들의 경향을 더욱 강화했다. 이렇게 정치적 전통은 극복되지 못하고 계승되어, 저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여하고 있던 것은, 인간관계망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함께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를 온존시킨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혹은 민족의 독립이 지상과제가 된 것은 ‘저항 민족주의’에 몇 개의 문제를 만들었다. 먼저 첫째는, 민족의 동질성이 당연시 된 것도 있고, 국가와 민족과의 준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민족독립과 동시에 국가 및 권력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는 인식을 ‘저항 민족주의’에 가져오고, 국가로서 형성의 경험의 결여 및 권위주의의 계승과 함께,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국가를 형성해 간다는 지향을 ‘저항 민족주의’로부터 결락시키는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부터 국가의 擬制性에 대한 인식 및 국가에 있어서 권력의 존재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의 쌍방의 결여 혹은 약함이 만들어졌다. 즉, 민족독립과 국가 형성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재의식 혹은 국가 독자의 행동원리, 그 위에 국가 및 권력이 민중과 적대할 가능성 등이 충분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부계혈연 중심의 인간관계망의 중시 및 권위주의도, 이 일에 대해서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권력관계에 대한 리얼리즘이 결여한 것이다. 이렇게 독립의 기회가 스스로 생취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본의 패전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저항 민족주의’는 국가 및 권력을 국민국가 및 국민주권이라는 형태로 아래로부터 형성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결과로서 정치적 혼란을 낳았고, 이전의 ‘친일파’가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둘째로 국민국가의 담당자인 국민 내지 개인과 민족과의 관계, 및 양자의 차이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국민 내지 개인의 형성도 부차적 혹은 독립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실현된다고 상정되었다. 개화파 혹은 애국계몽운동이 내건 ‘근대적 시민’의 창출이란 과제

56) 서대숙, 『조선공산주의 운동사』(일본어 역, 金達 역 코리아평론사, 1970년), 강만길, 『한국현대사』(일본어 역, 고려서림, 1985년) 등 참조.

57) Robinson, *op. cit.* 및 앞의 출고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민족주의>

는 민족독립이란 과제에 우선순위를 양보했다. 예를 들면, 한 독립운동가는 국가, 민족, 국민, 개인을 동일 차원에서 다루어,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그대로 국가, 민족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민족은 ‘자연 상태의 유기적 공동체’이고, 그 담당자는 민중=개인으로 규정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민족=국민=민중=개인이라는 인식은 그들만이 아니라 지도층에도 널리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이르는 동일시의 연쇄는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 ‘저항 민족주의’에 있어서 종래의 주자학적 인식으로부터의 이탈의 측면을 갖추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권위주의와 함께 독립운동에 있어서 현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⁵⁸⁾.

먼저, 이러한 인식에서 천하, 국가, 가족, 개인이 상하의 연속 관계에 있다는 종래의 주자학적 인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인식면에서 종래의 ‘理’에 기초한 인식으로부터의 이탈이 행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3.1독립운동 후의 민주공화제의 채용, 즉 군주제 및 ‘사직’이라는 민족적 가치로부터의 탈각에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도출된 것이 유기체적 공동체이고, 국가, 민족, 국민, 민중, 개인을 동일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서구적 사고의 세례를 거친 위에서의, 제 요소 간의 융합의 가능성 및 지도층과 민중의 협동이라는 이념상의 방침을 표현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민중의 ‘재야’ 세계의 사고, 특히 공동체성의 현재화, 즉 민중의 ‘恨’의 해방에 계속되는 전통적인 소박·단순지향성의 노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공동체성의 인식은 종래는 민간신앙 내지 민중종교에서 보인 것이었다. 즉 ‘저항 민족주의’는 민간신앙 내지 민중종교에 보이는 공동체성을 그 사상적 내용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성의 인식에 보이는 소박·단순지향성이 ‘저항 민족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중은 ‘저항 민족주의’에 공명하여, 그것을 지지했다.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은 강고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현실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먼저 국가, 민족, 국민, 민중, 개인을 동일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인식에서는 그것들이 상호 적대 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의 운동에서 제 요소간의 융합의 가능성 및 지도층과 민중의 협동이라는 이념상의 방침을 표방한다는 사태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도층과 민중은 분열하고, 또 민중은 지도층의 자원이었어도 조직적 동원의 대상조차 못되고, 더구나 운동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및 엘리트주의가 존재했다. 게다가 독립운동에 있어서 지도층의 실제 행동은 이념으로서는 공동체성을 사상적 내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理’에 있어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을 체현하는 것이었다. 이전 지도층은 민중을 鄉約에 의해 교화하고, 또 지도층과 민중이 연합할 때에도 ‘역성혁명’이 그 ‘理’이고, 민중의 ‘恨’은 운동의 지도이념이 될 수는 없었다. 독립운동에서도 신채호와 같이 주자학을 공격하고, 민족=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한 지도자는 매우 한정되어, 주자학적 가치관과의 대결, 혹은 그것과의 결별은 전통 파괴적 언동이 표면적으로는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의 온존과 함께 모든 지도자에게 보이지 않았다⁵⁹⁾. 지도층은 자신의 민중지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이로부터 독립

58) 안병직, <한용운의 독립사상> 및 <신채호의 민족사상>(동, 『일본제국주의와 조선민중』 일본어역, 宮嶋博史 역, 御茶の水書房, 1986년).

59) 상동 및 並木眞人, <식민지기 민족운동의 근대관- 그 방법론적 고찰(植民地期民族運動の近代觀-その方法論的考察)>(『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26집, 1989년 3월), 동, <식민지기 조선정치·사회사연구에 관한 시론(植民地期朝鮮政治·社會史研究に關する試論)>(『조선문화연구』 제6호, 1999년), 동

운동에 있어서 사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인식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실제 운동 가운데에 현재화하지 못했다. 즉, 여기서도 리얼리즘이 결여되었고, 이러한 ‘저항 민족주의’에 있어서 사상과 현실의 괴리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엘리트주의의 우위 및 리얼리즘의 결여를 가져온 채,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 후에 민족의 공동체성의 분출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은 그것을 유효하게 조직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공동체성을 표방하면서도 권력투쟁에 종사한다는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저항 민족주의’는 그 발로에 있어서, 국민국가 관념의 형성을 늦추어 권위주의를 온존시켰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 지도자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또 민족독립을 지상과제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내걸고 소박·단순지향성을 그 지지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운동에 있어서는 지도층은 종래의 ‘理’를 계승하여, 결과로서 엘리트주의의 내포 및 리얼리즘의 결여를 은폐하게 되었다. 그것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사상과 현실과의 괴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항 민족주의’의 특질은 민족독립 즉 해방이 실현되었을 때, 전면에 떠오르게 된다.

3. 식민지 통치와 개인추출

여기서는 근대화를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개인추출이라고 생각하여, 그 다양한 패턴을 검토한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제시한 이 틀은 본래 근대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개인 추출의 패턴에 따라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에 의하면, 정치적 권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느낄까라는 것과 결사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민주화·자립화·원자화·私化’의 네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한 국가, 사회에 있어서 네 가지 패턴의 구성비율은 변화하고 또 패턴간의 이행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⁶⁰⁾.

첫째로, 개화파나 애국계몽운동에 있어서 결사가 형성되어 민주화가 추진된 시기를 제외하고, 민주화된 개인이 추출된 케이스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구심적이어야 할 정치적 권위는 과거의 왕조·국왕이나 해외의 독립조직·지도자를 제외하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관인 총독부이며, 그 정책 결정에 참가하는 혹은 그를 위해서 자발적 결사를 결성하는 것은, 국가·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研政會 등의 자치운동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상기하고 싶다). 그러나 민주화된 개인의 추출은 3·1독립운동을 계기로 눈에 띄게 증대했을 것이다. 3·1독립운동은 이 의미에서도 개인추출에 있어서 첫째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공화제가 선택된 이상, 공화제의 실현 및 국가·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결사를 형성하고, 혹은 언론활동에 종사하여, 혹은 어떠한 형태로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려고 한 사람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그 대표적 인물이 정약용의 사상을 계승해서 종시 계몽활동에 종사한

<서평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Asian Center, 1999>(《아시아경제(アジア經濟)》 제42권 9호, 2001년) 등 참조.

60) 丸山眞男, <개인추출의 여러 가지 패턴(個人析出のさまざまnパターン)>(M.B. 젠슨 편, 《일본에 있어서 근대화의 제 문제(日本における近代化の諸問題)》 岩波書店, 1968년). 또 이하의 서술에 대해서는 앞의 출고, <근대조선에 있어서의 국가형성과 개인>참조.
편 이하의 서술에 대해서는 앞의 출고, <근대조선에 있어서의 국가형성과 개인>참조.

장지연일 것이다. 그는 자연을 응시함과 동시에, ‘민족적 자아’의 탐구를 지향했다고 말해진다⁶¹⁾. 또, ‘문화정치’기에 조선인에게 조금이나마 정치참가의 길이 열린 것은 그를 이어가는 인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는 당시의 조선인이 민주화된 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조선이외의 장소에서만 있을 수 있었고, 더구나 거기에는 주재하는 외국의 정부를 따로 하면, 구심적일 수 있는 정치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정치참가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장지연과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을 결코 보증하지 않았다. 총독부의 통치정책이 ‘문화정치’로 변화했다고 해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비판하거나,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25년에 조선에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이후, 그런 결사형성 활동은 탄압 당하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도 대략 국외에 그 장소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이윽고 분열되어, 친일파가 되거나, 이른바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되거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로서 잠행하거나, 어느 한 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과연 어느 정도 민주화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매우 의문스럽다. 예를 들면, 『민족개조론』과 『민족적 경륜』의 저자인 이광수는 1920년대 전반에 있어서 대표적인 민족주의 지도자였지만,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협력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⁶²⁾ 민주화된 것처럼 보인 개인도 역시 상황의 변화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외에서는 다른 문제가 존재했다. 국외 이외에는 결사형성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것은 전통적인 사회 및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는 시련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던 것,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의 결사형성 활동의 경험이 전후에 수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 구심적인 권리가 없었던 것은 공화제를 국가형태로 선택한 것과 함께, 권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경쟁을 치열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 간의 권력을 둘러싼 대립을 보다 활발하게 표면화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선대립을 둘러싼 권력투쟁에 연동했다. 이 경험도 역시 해방 후에 수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치’기에 열린 정치참가, 정치적 권리에의 접근은 원자화된 개인에 의하거나, 혹은 추출되지 않고 전통적 유대 가운데에 있는 인간에 의하거나, 어느 한 쪽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원자화된 개인이 증대했다고 하면, 그것은 식민지 통치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조선에 고유한 전통적인 행동양식이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 촌락 규모를 넘은 응집성을 발휘한 사례는 식민지화 이전에도 많다⁶³⁾. 따라서 중요한 것은 추출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 및 정치적 권리의 성격이고, 그들의 인간관계에서의 특징 및 정치적 권리와 민중의 관계이다. 권리와 민중의 관계를 말하면, 권리가 만일 면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민족의 것이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한, 민중에 가까운 존재와 겹쳐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면 원자화의 정도는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쉬운 원자화된 개인이 식민지화 이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늘어

61) 渡部學, <3.1운동의 사상사적 위상(3.1運動の思想史的位相)>(『사상』 제537호, 1969년)

62) Robinson, *op. cit.* 및 波多野節子 <이광수의 민족주의사상과 진화론(李光洙の民族主義思想と進化論)>(『조선학보』 제136호, 1990년)

63) 강재언 앞의 책, 및 앞의 출처, 『근대일한관계사연구』 동, 『한국현대정치』

난 것은, 다른 발전도상국에서와 같이, 대중운동과 그 폭발의 가능성성이 중대한 것, 또 권력과의 거리감을 상실해서 권력을 자기 목적화하는 개인이 늘어날 가능성을 가져온 것을 의미한다. 또 전술한 것처럼, 개인이 권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훨씬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온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자화된 개인은 농민의 계층분화에 따른 이촌 혹은 강제동원 등에 의해서도 생겼다고 생각된다. 1930년부터 35년까지의 이촌자는 연평균 6만 명이었지만, 35년부터 40년까지는 연평균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 31년에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촌자를 증가시켜, 당시의 중공업화 정책은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37년의 중일전쟁의 발발에 따른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은 강제동원·연행과 함께, 원자화된 개인을 방대한 수로 만들었을 것이다. 어느 推計에 의하면 강제연행자수 만 해도 약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⁶⁴⁾

이렇게 1919년의 3.1독립운동 시기를 개인추출의 제1의 분수령이라고 하면, 37년 전후의 강제동원의 시기를 그 제2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분화 및 강제동원·연행에 의한 이촌자는 가족을 동반하거나 혹은 친척 지인 등을 동반하지 아니면, 대략 원자화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황이 변화하면,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전의 농촌에 돌아갔을 때 그 농촌에 이전의 공동체가 존속하고 있고 가족·친족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이촌·귀농자는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추출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촌자가 독신이고, 각지에서 모인 자, 알지 못하는 자 속에 있는 한, 그것은 역시 원자화된 개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위에 도시화 비율에서 보더라도, 1935년까지는 7퍼센트였던 것이, 40년에는 2배인 14퍼센트로 오른 것을 봐도 분명한 것처럼, 도시로 빙민이 집중하는 사태가 제2의 분수령 이후 생긴 것이다. 이것도 원자화된 개인의 증가를 충분히 예측시킨다고 할 수 있다.⁶⁵⁾

더구나 중요한 것은 공업화가 이러한 개인에 의해 담당되어(특히 조선 북부의 중공업화에 즈음하여, 조선 남부의 사람들이 많이 정용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⁶⁶⁾), 또 자립화의 계기가 한층 박약했다는 것에서, 스트라이크 등 근대적으로 보이는 운동에서도, 그 참가자의 대부분이 원자화된 개인이었던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어느 연구에 의하면, 1930년대 후반에는 자본가의 노사관계 개선의 움직임이나 기술·교육 수준의 향상 등에 의해 노동자의 ‘질적 발전’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⁶⁷⁾. 따라서 노동자 속에는 노동운동을 조직하는 자를 비롯하여, 민주화된 개인이 추출될 기회는 증가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질적 발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도적 다수는 고향에서 분리된 사람들이고, 대략 자유노동자나 비숙련공이었다. 그렇기

64) 박경식 앞의 책. 현재 이 수자에 대해서는 이론도 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水野直樹 편, 『戦時期植民地統治資料』(柏書房, 1998년), 동 외편, 『일본의 식민지지배(日本の植民地支配)』(岩波書店, 岩波북문학, 2001년) 참조.

65) 한국사회학회편, 『현대 한국사회학』(일본어역, 小林孝行 역, 新泉社, 1988년), 및 김운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서울, 박영사, 1986년)

66) 水田 앞의 책, 박경식 앞의 책 및 고승제 앞의 책.

67) 안병직, <식민지 조선의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植民地朝鮮の雇用構造に關する研究)>(中村哲 외편, 『조선근대의 경제구조(朝鮮近代の経済構造)』 일본평론사, 1987년), 및 토론 <식민지기의 노동자와 부르주아지(植民地期の労働者とブルジョワジー)>(中村哲 외편, 『조선근대의 역사상(朝鮮近代の歴史像)』 일본평론사, 1988년).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은 원자화 혹은 사화된 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해방 후 고향에 돌아갔을 때, 원자화 혹은 사화된 개인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 위에 1937년경부터 실시된 지원병제도는 그 실질이 강제입대였다고 하더라도, 군인으로 촌락공동체를 떠난 자들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립화한, 혹은 민주화한 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역시 추출되지 않거나, 원자화 혹은 사화된 개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국내가 아니고 예를 들면 만주와 같은 지역에서 병역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자화 혹은 사화의 정도는 높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대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와 다른 사회적 상승의 가능성이 충족되는 반면, 자립화 하물며 민주화의 가능성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그들이 조선군대의 중추를 구성한 것이다⁶⁸⁾.

이상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제3에 자립화한 개인의 사례는 매우 적다. 식민지 통치가 그러한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마도 최대의 이유일 것이다. 처음부터 자립한 개인으로 영국의 자영농민족(yeomanry)에서 성장한 상승기 부르주아지가 전형이라고 지적되는 한, 조선에 그러한 유형이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억지로 생각하면 기업가화 된 지주가 생각되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립화한 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추출되지 않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느 쪽이라도 자립화한 개인이 추출될 가능성은 적고, 그것을 식민지 통치가 극소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외로서 조선 이외의 장소라면, 자립화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는 조선이란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회박해지거나, 포기될 것이다. 민족적 안전감이 없는 곳에는, 자립화는 정치적 의미를 그다지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4의 사화된 개인도 역시 3.1독립운동 및 강제동원이라는 두 시기를 분수령으로 급증했을 것이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낭만문학이나 30년대의 문학지상주의의 유행은, 이러한 경향을 현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현실도파의 방향성이다. 그것이 기계적 혹은 비현실적인 추상적 영역이 아니고, 전원이나 자연을 향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다. 조선의 경우에는 30년대에는 ‘프로문학’이나 ‘경향문학’의 담당자가 탄압당한 뒤에, ‘전원문학’이라 불리는 경향이 등장한다. 즉, 얼핏 보면 자립화 내지 사화적 색채가 짙은 일본의 ‘自権派’와 같은 문학이 등장하는 것이 30년대라는 시기인 것이다⁶⁹⁾. 30년대는 ‘대륙병참기자화’의 시기이고, 후반은 황민화정책이 불어댄 시대이다. 전원 내지 자연을 찬미하는 문학의 출현을 현실도파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詠歎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전원이나 자연을 조선의 전통으로 찬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자립화에의 맹아로 말할 수 없을까. 더구나 그것은 코뮌 건설이라는 집단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민주화된 것이라고도 말하기 어렵다. 사화의 대세 가운데 자립화의 방향성이 등장할 경우, 그것이 전통회귀, 자연찬미라는 형태를 취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조선의 사상적 전통이나 정치 사회의 특수성의 반영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추출이란 현상은 이촌자 내지 도시의 지식인 사이의 일이고, 많은 사람들은 추출 전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이 온존·강화되어, 혹은 조선내셔널리

68) 줄고, <미군정하 남조선의 정군관계(美軍政下南朝鮮の政軍關係)>(三谷太一郎 편 『年報政治學 1989·近代化過程における政軍關係』 有斐閣, 1990년), 앞의 줄거, 『한국현대정치』 및 Kim Se-Jin,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1.

69) 김동욱, 『조선문학사』 (일본방송출판협회, 1974년), 및 지명관, 『한국문화사』 고려서림, 1979년.

쯤 고유의 민속이 평가된 것이 식민지기 였다고 하면 더욱 그렇다. 조선내셔널리즘의 공동체적 현실은 강고했던 것이다.

IV. 맷음말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통치와 조선인의 대응의 쌍방에 대해서, 사료에 의거해서 상세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기보다, 주로 이론적 검토를 했다. 여러 곳에 典據로 언급한 것처럼, 식민지기에 관한 연구는 근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상세한 것은 그것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도 이론적으로는 외래의 분석틀에 의존하고 있다. 사료에 기초한 내재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본 연구와 같은 이론적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参考資料】

1. 〈韓國に對する施政方針〉 (1910 (明治43) 年6月3日)

明治四十三年六月三日閣議決定

- 一、朝鮮ニハ當分ノ内憲法ヲ施行セス大權ニ依リ之ヲ統治スルコト
- 一、總督ハ天皇ニ直隸シ朝鮮ニ於ケル一切ノ政務ヲ統括スルノ權限ヲ有スルコト
- 一、總督ニハ大權ノ委任ニ依リ法律事項ニ關スル命令ヲ發スルノ權限ヲ與フルコト但本命令ハ別ニ法令又ハ律令等適當ノ名稱ヲ付スルコト
- 一、朝鮮ノ政治ハ努メテ簡易ヲ旨トス從テ政治機關モ亦此主旨ニヨリ改廢スルコト
- 一、總督府ノ會計ハ特別會計ト爲スコト
- 一、總督府ノ政費ハ朝鮮ノ歲入ヲ以テ之ニ充ツルヲ原則ト爲スモ當分ノ内一定ノ金額ヲ定メ本國政府ヨリ補充スルコト
- 一、鐵道及通信ニ關スル豫算ハ總督府ノ所管ニ組入ルルコト
- 一、關稅ハ當分ノ内現行ノ儘ニナシ置クコト
- 一、關稅收入ハ總督府ノ特別會計ニ屬スルコト
- 一、韓國銀行ハ當分ノ内現行ノ組織ヲ改メサルコト
- 一、合併實行ノ爲メ必要ナル經費ハ金額ヲ定メ豫備金ヨリ之ヲ支出スルコト
- 一、統監府及韓國政府ニ在職スル帝國官吏中不用ノ者ハ歸還又ハ休職ヲ命スルコト
- 一、朝鮮ニ於ケル官吏ニハ其ノ階級ニ依リ可成多數ノ朝鮮人ヲ採用スル方針ヲ採ルコト

[出典] 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原書房

2. 原敬 〈朝鮮統治私見 内治同化の立場より統治方針を述ぶ〉 (1919年)

朝鮮統治私見 (上)

朝鮮は最初は獨立國として交際し後は保護國と爲して之を統治し遂に明治四十三年八月に至りて併合して我版圖に歸せしめたるものなり。保護國時代は暫く措き併合後に於ける朝鮮に對する制度は大體に於て臺灣を模倣したるものなり。而して其模倣したる臺灣制度なるものは二十七八年日清戰役の結果として始めて我領土となり當時新領土を統治したる經驗なかりしに依り歐米諸國の殖民地に對する諸制度を參照して決定したるものなることは當時余の臺灣事務局に參畫して飽まで承知する所なり。

右の次第なるに依り朝鮮制度の得失を論ずる場合には其模倣したる臺灣制度に遡つて論究するの必要あり。然るに臺灣制度なるものは前陳の如く新領土を統治するの經驗なかりしに依り已むを得ず歐米諸國の殖民地制度を參照したるものなれば之を以て我帝國の新領土に對する根本制度と認むること能はずして大體に於て之を試験中の制度なりと云ふを妨げざるべし。故に臺灣にしても朝鮮にても現行制度を以て永久不變のものなりと認むるは初めより誤解なり。

臺灣の我新領土に歸して以來二十幾年大に刷新を要するものありと雖も朝鮮と一律に論ず可からざる事情あれば暫らく之を措き朝鮮に於ける併合後約十年の經驗に依れば現行制度は根本的に誤れるものなることを斷言し得べし。何となれば其模倣したる歐米諸國の殖民地は我帝國の朝鮮に對するものとは全然其性質を異にするものなり。歐米諸國に屬於する殖民地は人種を異にし宗教を異にし歴史を異にし獨り言語風俗の

異なるのみならず斯の如く根本的に相違あるが爲めに之に對しては特殊の制度を布かざるを得ず。然るに我帝國と新領土たる朝鮮との關係を見るに言語・風俗に多少の相違ありと雖も其根本に遡れば殆んど同一系統に屬し人種に於ては固より異同なく歴史に於ても上古に遡れば殆んど同一なるものと論し得るが如し。斯の如き密接なる關係を有する領土を歐米諸國が本國を去ること遠く而して種々の点に於て全然特殊なる領土を治むるが如き制度を模倣して此密接なる新領土を治めんとするが如きは大なる過誤にして其不成績を見るは當然の事なり。今回の騒擾の如き即ち此見地よりすれば怪むに足らざるなり。

故に余の所見を以てすれば朝鮮も内地も全く同一なる制度を布いて可なりと信ず。即ち行政上・司法上・軍事上其他經濟・財政の點に於ても教育指導の點に於ても全く同一ならざるべからず。之を同一に爲して而して同一なる結果を得べしとの確信を置き得べし。現在に於ても朝鮮人の狀態を見るに好んで内地人に同化し得るが如く何等の點に於ても同化し得ざるの根本的性質を有するものとは認むることを得ず。故に朝鮮を統治するの原則としては全く内地人民を統治すると同主義・同方針に依るを以て根本政策と定めざるを得ず。唯文明の程度生活の狀態等遠に同一にすること能はざれば暫らく漸を以て進むの方針を定めざるを得ざるのみ。

然るに世間には朝鮮に自治を許すの論を爲す者あり。我府縣制・町村制の示すが如き自治ならんには固より妨げあるべからず。又其自治の域に達することを希望すと雖も歐米諸國の新領土に於ける自治の如きものを布かんとするの論は朝鮮に對しては根本的に其主義を誤れるものなることは以上の論旨に依りて諒解し得べし。

又朝鮮が動もすれば獨立を企つべしとの疑惧心を以て對鮮政策を樹てんとする者あり。是れ彼等をして常に我に反抗し獨立を企つるの念慮を生ぜしむるものにして甚しき愚策なり。何れの國に於ても其獨立を失ひたる人民が獨立の舊時を懷ふことは數世紀を通ずるも全く消滅することなかるべしと雖も去りとて現在其統治の下に在りて幸福安寧を得向上發展する以上には彼等に舊時を懷ふの念ありとするも之が爲めに叛逆を企つる如き者は大體に於て之あるべからず。固より一二不逞の徒ありて國民を煽動せば附和雷同する者多少は之あるべしと雖も之が爲めに大局を紊るの懸念あるべからざるのみならず我兵力富力假令朝鮮に一揆判亂起れりとするも之を鎮壓すること固より容易の業なりと信ず。

右の次第なるに因り動もすれば獨立を企つべしとの疑惧心を去り又從來外國の制度を模倣したる誤謬を排し結局朝鮮の内地に同化するの方針を以て諸般の制度を刷新することは最も今日に適切なる處置にして又併合の目的も爰に始めて達することを得べしと信ず。

〔出典〕『齊藤實文書』第13卷（原文カタカナ。一部句讀点・濁点を補っている－引用者）

3.宇垣一成〈朝鮮統治方針〉（昭和9年1月3日）

半島在任二年有半色々と實際に触れて研究して見たが、 大體次の見當で努力を重ねて行けば朝鮮の更生、内鮮同化の目的の要部は達成し得らる様な氣分が起り來たれり矣。本案に示す各期は昭和七年を起点として概ね八乃至十年と予期し居る所なり。（一月三日）

第一期 生活の安定（春窮退治、借金退治、無軌道經濟の退治、文盲退治），生活の繁盛、地方自治の訓練、各種工業の誘致振興、諸事業の合理化

第二期 生活の向上（無產者の有產者化、自作少くも自作兼小作農の創設、衣食住の改良），義務教育制の創始、地方自治の擴張、農業兼工業朝鮮の完成

第三期 生活の充實、地方自治の完成、義務教育の完備、自作及自作兼小作農の完成

第四期 參政權の附与、義務兵役制の實施、特別統治制の廢止

く其後一ヶ年間の研究の結果は、各期は概ね六乃至十年とし、第一期は十年、第二期は八年、第三、第四期は六年づゝの辺にて可なるが如し。尙講究の繼續を必要とす。（九年十二月中旬）

其後結局三期として十年一月十一日意見を公示せり。>

[出典] 『宇垣一成日記 2』みすず書房。

4.〈獨立宣言書〉(1919年3月1日)

吾等은 故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の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該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為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因基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為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 |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 | 며, 全人類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強權主義의 犠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지 처음으로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權의 剝奪됨이 무릇 幾何 | 며,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 | 며, 民族的 尊榮의 毀損됨이 무릇 幾何 | 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 | 뇌.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芭除하려 하면, 民族의 良心과 國家의 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 하면, 各個의 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恥의 財產을 遺與치 안이하여 하면, 子子孫孫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急務가 民族의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 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強을 挫치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야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 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을 土昧人遇하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의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綱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辦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 吾人の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의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舊思想, 舊勢力에 羙麋된 日本의 為政家の 功名의 犠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해야, 自然, 又 合理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의 要求로서 出치 안이한 양국병합의 結果가, 畢竟 姑息의 威壓과 差別의 不平과 統計數字上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없는 怨溝를 巨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라.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真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또, 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안일 뿐 안이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의 主軸인 四億萬 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를 갈스름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의 全局이 共倒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の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야금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야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하는 不安, 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필요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한 感情上의 問題 | 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의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水寒雪에 呼吸을 閉蟄한 것이 皮一時의 勢 | 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 | 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躉躇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할 것이 업도다. 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야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獨創力を 發揮해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의 精華를 結紐할지로다.

吾等이 紛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并進하는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羣象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을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끝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驚進할 仗임인데.

公約 3章

- 一, 今日 吾人の 此擧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의 要求 | 니, 오즉 自由의 精神을 發揮할 것 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 一,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 一,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の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一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彌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豐煥 朴淮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出典]

5.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大韓民國元年:1919年4月11日)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의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黎民에 世傳기 위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大韓民國臨時憲章

-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貴賤 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平等임.
-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教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舉權 及 被選舉權이 有함.
-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 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한여 建國한 精紳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여 人類의 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위하여 國際聯盟에 加入함.
- 第8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 및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은 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大韓民國元年 4月 日

臨時議政院 議長 :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 李承晚

內務總長 : 安昌浩

外務總長 : 金奎植

法務總長 : 李始榮

財務總長 : 崔在亨

軍務總長 : 李東輝

交通總長 : 文昌範

宣誓文

尊敬하고 敬愛하는 我二千萬 同胞 國民이여, 民國 元年 三月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宣言함으로부터 男과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는 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는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翳然히 我 集中하였도다. 此時를 當하야 本政府—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코 戢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는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과 邦基礎固의 大使命을 課하기를 紛에 宣言하노라. 國民 同胞이여 奮起할지어다. 우리의 流하는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一마침내 日本의 野蠻을 教化할지요. 우리의 正義一마침내 日本의 暴力を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까지 鬪爭할지어다.

政綱

1. 民族平等 國家平等 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2. 外國人の 生命財產을 保護함.
3.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4. 外國에 對한 權利義務는 民國政府와 締結하는 條約에 一依함.
5. 絶對獨立을 誓圖함.
6.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는 者는 通으로 認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出典]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國會圖書館, 1974

[비평문]

정재정

이 논문은 일본의 조선지배를 세 시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을 ‘개인의 추출’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내셔널리즘의 특성을 究明하려는 것이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선지배의 제1기(1910~19년)는 ‘무단통치기’로서, 현병주도의 치안유지, 반일운동의 억압, 언론단속과 교육을 통한 ‘忠良한 臣民’의 육성, 토지조사사업, 철도의 정비, 산업의 억제, 조선총독부 재정의 독립 등이 시도되었다. 일본국내 정치세력의 동향에서 보면, 陸軍軍閥이 조선에서 정치적 독립영역을 구축하고 ‘鮮滿一體化構想’을 실행에 옮겼다. 제2기(1910~31 혹은 37년)는 ‘문화통치기’로서, 前期에는 통치정책의 비군사화, ‘內地準據主義’ 적용, ‘친일파’ 등용,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수익자 총’의 형성, 일본자본의 진출에 따른 고용창출, 후기에는 행정·재정 정리, 増稅, 지방으로의 사업 이관, 정치참가의 일부 허용, 치안유지법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일본국내에서는 정당정치에 의한 조선통치의 非軍事化가 시도되었다. 제3기(~45년)는 ‘大陸兵站基地化期’로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경계로 前期에는 중공업화정책, 후기에는 총동원정책이 추진되었다. 정치세력 면에서는 군부가 드세하여 조선의 군사적 지배로 회귀했다.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은 臺灣에서의 통치경험(일본과의 分離統治), ‘한국客體觀’, 현실적 고려, 관료적 사고·행동양식, 조선의 공동체적 현실(宗族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인간관계망) 등에 영향을 받아 입안·수정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철저한 從屬화와 일본식 근대 정치운영방식의 移植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에서 협력적 집단과 개인(친일파), 그리고 私的 이익추구와 권위주의적 풍토를 養生했다.

조선인의 저항운동은 제1기(3·1운동까지)의 비밀결사운동, 제2기(1920년대)의 ‘실력양성운동’ ‘민족협동운동’ ‘대중조직화운동’, 제3기(1930년대 이후)의 ‘국내운동 위축’ ‘국외운동 지속’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저항운동에서 나타난 특징은 ‘저항 민족주의’의 강화, 리더십의 不在와 분열, 전통적 권위주의의 온존 등이다. 이 특성은 조선인에게 국가형성과 민족독립의 준별을 어렵게 했으며, 국가·민족·국민·개인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즉 민족독립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저항적 민족주의’는 국민국가 관념의 형성을 지체시키고 창조적 리더십의 결여를 초래했다. 따라서 지도층은 계속 분열하여 전통적 권위주의가 증폭되고, 아래로부터의 질서형성과 현실주의지향은 희박해졌다.

이 논문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조선인의 대응을 정치학의 이론을 동원하여 역사적·체계적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앞으로 該當時期의 연구에 자극을 주는 한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논문에서 일본의 조선지배와 조선인의 대응을 상호관련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제시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실체가 애매하다. 조선인이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反日的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온 것이 通說인데, 이것을 ‘저항적 민족주의’로 규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저항적 민족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저항

의 대상에 일본 이외의 다른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 논문은, ‘저항적 민족주의’가 지키려고 한 실체가 ‘전통적=종족적 공동체’라는 듯한 논지를 펴는데, 일본통치기의 조선사회는 ‘전통적=종족적 공동체’에서 탈피해가는 것이 大勢가 아니었는가?

둘째, 이 논문은 한국내셔널리즘의 특징으로서 국가·국민의식의 회박, 리더십의 결여와 분열 등을 들고, 그 연원을 식민지하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그 운동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이 경청해야 할 忠告임에 틀림없지만,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일본의 조선지배의 특질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내셔널리즘의 부정적 측면과 일본의 조선지배의 상관관계를 좀더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셋째, 이 논문은 일본의 정치사에 적용한 이론을 조선에 원용하여,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개인’을 민주화·자립화·원자화·私化의 관점에서 추출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민주화·자립화된 개인은 거의 없고, 원자화·私化된 개인은 어느 정도 나타났으나 그것마저도 傳統回歸나 現實逃避의 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의 조선지배가 민주화·자립화된 개인의 성장을 극력 억제한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뉘앙스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폐단에서 그 원인을 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원인과 결과의 倒置가 아닐까? 또 일본과 조선의 정치 事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따르는 위험부담은 없는가?